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86호 2023. 11. 16.(목)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580호)
- 예천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581호)
- 예천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582호)

고 시

- 하천점용허가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3-163호)

회 람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담당관(전화 650-6065)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1월 1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80호

예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

에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2.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 및 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 인력 확보) 군수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상담·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장애 인식개

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 및 장애인범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다.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장애인 인권침해·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 장애인 인권침해·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 및 연계
-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라. 장애인 시설 점검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장애인 거주시설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신고

마. 장애인 시설 점검 인력 확보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규정

바.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등의 예방을 위해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가능

사. 장애인 인권침해·범죄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안 제8조)

아.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규정(안 제9조)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1월 1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81호

예천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수도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이라 함은 「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이라 함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③ 군수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표창
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 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 수도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수도법」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이행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적극적인 설치를 유도하여 물 절약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물 절약을 위한 지원사항 규정(안 제5조)

- 물 절약 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표창, 각종 행정적 지원 규정

마. 절수설비 등의 이행책임 및 검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건축주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이행책임을 규정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1월 1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82호

예천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예천군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예천군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 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제1항과 「예천군 영유아 보육조례」에 따른 보육계획 또는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 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심리검사 및 진단, 치유 프로그램 제공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4.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증진 지원사업
5.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6.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예천군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예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예천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회의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조례 적용대상 및 군수의 책무(안 제3조~안 제4조)

- 적용대상 : 예천군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다.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안 제6조)

-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수립 시 보육교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

-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 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라.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지원사업(안 제7조)

- 지원사업 :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검사, 권익 보호 관련 교육지원 사업,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등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예 천 군 수

구 분	하천점용허가
하 천 명	한천(지방하천)
점 용 자 주 소	예천군수(맑은물사업소장)
위 치	한 천 :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582
점용면적 (허가량)	1,800m ³
점용목적	토석의 채취
사업개요	수해복구를 위한 토석채취
점용기간	2023년 11월 16일 ~ 2023년 11월 30일